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1. 2.

제안자 : 정무위원장

## 1. 제안경위

가. 2020년 7월 24일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0. 9.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0년 9월 28일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20.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20년 11월 12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1. 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20년 12월 22일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1. 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2021년 2월 10일 강민국의원외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 2. 23.)에 직접 회부하였음.

바.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 2. 23.)에서는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사.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1. 2. 25.)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제안이유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이에 판매사와 수탁사로 하여금 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감시·견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외부감사 도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여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 총수는 그대로 49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사모펀드의 분류기준 변경 및 투자자 수 확대(안 제9조제19항)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함.

#### 나. 신탁업자의 운용감시의무(안 제77조의3 및 안 제249조의8제2항제5호 신설)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

다.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의무 도입(안 제249조의4 및 안 제249조의8제2항제1호 신설)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

라. 기타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안 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및 영업보고서 기재대상 확대,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외부감사 도입 의무를 도입함.

마.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2)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한 분류 체계 하에서는 그동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되는 서로 다른 규제를 완화하여 일원화함.

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안 제165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등)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조제6항제3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을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8항 중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9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11조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보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경우

##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 제178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사유”를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 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 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165조의1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6항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5조의20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83조제2항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2조제2항제6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3조제1항 및 제7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1조제2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6조제3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7조의6제2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1조제6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재무상태표

제247조제3항 본문 중 “제3영업일”을 “3영업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을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해당 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을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으로 한다.

제5편 제7장 제1절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장 제2절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한다.

제249조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49조의3의 제목·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항 전단·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법률 제171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전문투자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하고, 그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하여 해당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

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제5항의 요구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4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49조의6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가목·나목·다목·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4항 전단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7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호 및 제3호 중 “전문투

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부동산에 운용할 때”를 “운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처분”을 “처분(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2주일”을 “3영업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액의 총액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호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

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법률 제171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249조의8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2조, 제93조”를 “제9

3조”로, “제238조제6항”을 “제238조제7항”으로,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

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

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

의 제5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전문투자

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

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종전의 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제76조제2항.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30조제5항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7조의 “투자설명서”는 “핵심상품설명서”

로, 제247조제3항 중 “3영업일”은 “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 그 기간”으로 각각 본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법률 제172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9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6호·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4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제6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및 제6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1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자기구”로, “49명”을 “10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자기구”로, “경우”를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를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자기구”로 한다.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제24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9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사모집합투자기구”로, “49명”을 “100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제249조의12제4항·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 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⑥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249조의14제1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집행할 수 있

다”를 “집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보호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채산의 안정성 등을”을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원의 이익을”을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249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8항) 중 “제5항까지”를 “제5항까지 및 제8항”으로, “절차, 그 밖에”를 “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 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제2호·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7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49명”을 “100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8의 제목 및 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을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19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업무집행사원”을 각각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



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249조의20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77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20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

의9까지”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1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2의 제목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

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제6항 본문 및 제7항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3의 제목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회사등”을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44조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3 중 “제249조의7제2항”을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의4를 제19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제445조제25호의2 및 제25호의3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446조에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1호의2 및 제41호의3을 각각 제41호의3 및 제41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1호의4(중전의 제41호의3)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5호 중 “제249조의12제3항·제4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49조의22제2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6호의2 중 “제249조의12제6항·제9항 또는 제249조의23제5항”을 “제249조의23제5항”으로 한다.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작성·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449조제1항제41호의3 중 “제249조의7제3항”을 “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별표1 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에 제8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6의4. 제7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1 제259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 제259호의2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259호의3 중 “전문사모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법률 제171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1 259호의4 중 “제249조의4”를 “제249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표1에 제259호의5부터 제259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9의5.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작성·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59의6.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59의7.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59의8.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등에 관하여 제249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별표1 제260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260호의6부터 제260호의9까지를 각각 제260호의8부터 제260호의11로 하고, 제260호의6 및 제260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60호의10(중전의 제260호의8)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60의6. 제24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260의7.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별표1에 제260호의12부터 제260호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0의12.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60의13.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260의14.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260의15.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260의16.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2 제77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2 제78호의3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2에 제78호의11부터 제78호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의1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8의12.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78의13.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78의14.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78의15.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6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6 제1호 중 “제252조제1항”을 “제249조의14제12항”으로 한다.

별표6 제2호 중 “제2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을 “제249조의14제13항”으로 한다.

별표6 제3호 중 “제252조제2항”은 “제249조의14제13항”으로 한다.

별표6 중 제9호,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1항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의3.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9의4.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6 제15호의2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6 제15호의5부터 제15호의7까지를 각각 제15호의6부터 제15호의8까지로 하고, 제1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5. 제249조의15제8항에 따른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6 제21호의2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6 제21호의3을 삭제한다.

별표6 제21호의5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2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49조의6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중 이 법 시행일 당시 제249조의7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중 제249조의11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3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제249조의22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22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전에 제249조의23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는 추가로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자로부터의 출자 약정은 제외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들이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249조7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해당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5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은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제6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시 설명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8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말일 또는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4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249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단서 및 같은 목 (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

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⑨ (생략)</p> <p>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u>”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p> <p>1.·2. (생략)</p> <p>3.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u></p> <p>4. 그 밖에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⑨ (현행과 같음)</p> <p>⑩ ----- -----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 -----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u>--- -----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u>----- -----</p> <p>4.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u>----- ----- ----- -----</p>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⑳ ~ ㉓ (생략)

㉔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㉕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⑳ ~ ㉓ (현행과 같음)

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㉕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  
-----  
-----  
-----

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자, 투  
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  
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  
다.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  
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  
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  
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  
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  
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  
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계



법률 제17805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

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  
우

4.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  
상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보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  
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 제17805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4. (생략)

-----  
-----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등-----  
-----  
-----

1. -----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등-----  
-----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  
-----  
-----

3. -----  
-----일반 사모집  
합투자기구등-----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등-----  
-----

4. (현행과 같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 5. (생략)

② (생략)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

-----  
-----  
-----  
-----  
-----.

1. (현행과 같음)

2. -----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① -  
 -----  
 -----  
 -----  
 -----  
 -----  
 -----  
 -----  
 -----  
 -----  
 -----.

1. -----  
 -----경

우

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 4. (생략)

⑤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

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무상태표-----  
-----  
-----.

1. ~ 4. (현행과 같음)

⑤ -----재무상태표-----  
-----  
-----  
-----  
-----.

⑥ -----재무상태표-----  
-----  
-----





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③ ~ ⑤ (생략)

제203조(청산)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  
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  
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  
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청산인은 제1항에 따라 승  
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  
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  
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집  
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1조(준용규정) ① (생략)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  
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

구-----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3조(청산) ① -----

-----

-----

-----

-----

-----재무상태표-----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재무상태

표-----

-----

-----

-----

-----

-----

제211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한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법인이사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법인이사”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제216조(준용규정) ①·② (생략)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

-----  
-----.

-----  
-----

-----  
-----

-----  
-----

-----  
-----

-----  
-----

-----재무상태표-----

-----  
-----

-----재무상태표-----

-----  
-----

-----  
-----.

제216조(준용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주주총회”는 “조합원총회”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으로 본다.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3. (생략)

② ~ ⑥ (생략)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

재

무상대표

--.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1. 재무상대표

2.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3영업일



⑦ (생략)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문사  
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자) 전문투자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  
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전문사  
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  
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  
할 수 있다.

1. 2. (생략)

제249조의3(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의 등록) ① 전문사모집합투자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  
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

-----.

⑦ (현행과 같음)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  
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자-----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1. 2.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의 등록) ① 일반 사모집합투  
자업-----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2. (생략)
- 3.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목적 설비를 갖추는 것
- 4. ~ 6. (생략)
- 7.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 3.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

- 4. ~ 6. (현행과 같음)
- 7.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  
-----  
-----  
-----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

④ -----  
-----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3.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  
-----  
-----.

⑤ (현행과 같음)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1. -----일반 사모집합투자  
업-----

2. 3. (현행과 같음)

⑦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일반 사모집합투자  
업자-----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  
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  
여야 한다.

⑨ (생략)

법률 제17112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⑨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112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투자권유 등) ① 일반 사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  
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  
성하여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  
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설명  
서에 기재된 사항(경미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전문투자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하고, 그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하여 해당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제5항의 요구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집합투자업자가 3

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  
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요구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고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  
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  
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  
다.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  
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  
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제249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투자광고) ①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할 것

제249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

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49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1. -----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자

다.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  
자·투자중개업자

라. (생략)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생략)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  
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  
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

-----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  
-----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  
-----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  
-----  
-----

라. (현행과 같음)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

4. (현행과 같음)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생략)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 사모집

합투자기구-----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방법 등) ① 전문사모집합투자  
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자기구의 자산총액  
 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  
 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합  
 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  
 이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 사  
모집합투자기구-----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1. (현행과 같음)
2.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신 설>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  
-----  
-----  
-----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액의 총액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할 때-----  
-----  
-----.

1. -----  
-----  
-----  
-----처분(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



<신 설>

<신 설>

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  
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호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  
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  
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  
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3영업일-----

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  
---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  
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  
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  
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  
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신 설>

입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  
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  
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  
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투자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아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  
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  
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  
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  
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  
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  
모집합투자기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

⑦ -----제6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







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제76조제2항.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30조제5항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

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7조의 “투자설명서”는 “핵심상품설명서”로, 제247조제3항 중 “3영업일”은 “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 그 기간”으로 각각 본다.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

-----  
-----  
-----  
-----  
-----  
-----  
-----  
-----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  
-----  
-----  
-----  
-----  
-----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  
-----

⑨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으로 본다.

법률 제172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49조의9(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 5. (생략)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전

-----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

법률 제172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2. ~ 5. (현행과 같음)
6. -----  
-----일



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 9. (생략)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제6호의 사항

2. (생략)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반 사모집합투자업자-----

-----

-----

-----

---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9. (현행과 같음)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1. -----

-----제6호-----

---

2. (현행과 같음)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생략)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  
-----  
-----  
-----.

⑥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 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⑦ -----  
-----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⑧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  
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  
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⑨ (생략)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  
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  
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  
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  
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  
-----  
-----  
-----.

⑨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가. 투자대상기업[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라 한다)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

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

사에의 예치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건전한 자산운

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방법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

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금액을 제1

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

호(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등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  
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  
를 포함한다)는 투자목적회사  
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  
의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  
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  
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  
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  
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  
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  
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  
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  
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등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  
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경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제7항에 따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제249조의1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

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생략)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다. (생략)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생략)

② (생략)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 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3. -----  
-----  
-----  
-----  
-----  
-----  
-----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  
-----

나.·다. (현행과 같음)

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100인-----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생략)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제249조의12제4항·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신설>

⑥ (생략)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

⑥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
3.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자산의 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보호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성

-----  
-----.

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  
-----.

⑥ -----  
-----  
-----  
-----.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2. (현행과 같음)

3. -----  
-----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

4.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  
-----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행위준칙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⑦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⑧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⑩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⑪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  
-----

⑩ -----  
-----  
-----  
-----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⑪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⑫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5. (생략)

② ~ ⑤ (생략)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  
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  
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  
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  
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용전문인력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⑦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1. ~ 4. (현행과 같음)

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

⑧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

<신 설>

<신 설>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득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 (생략)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49명을 초과하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2.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00인-----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제249조의11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  
-----.  
-----.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

-----  
-----.

② -----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등-----

-----재무  
상태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



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5. (생략)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

-----  
 -----  
 -----  
 -----  
 -----  
 -----  
 -----  
 -----  
 -----  
 -----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3. (현행과 같음)

4. -----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 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5. (현행과 같음)

③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  
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  
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  
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  
유하는 행위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제2  
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  
하는 행위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  
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  
회사에 관한 규정은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  
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12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  
-----  
-----

④ -----  
-----  
-----  
-----.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등-----  
-----  
-----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  
-----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  
례) ① -----  
-----  
-----사모집합투  
자기구-----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  
호-----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  
-----  
-----.

②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  
-----  
-----  
-----  
-----.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2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  
-----  
-----  
-----  
-----  
-----  
-----.

④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 6. (생략)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1. 2. (현행과 같음)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4. ~ 6. (현행과 같음)
7.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1. ~ 7.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  
-----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 6. (생략)

②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 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

-----  
-----  
-----사모집합투자기구를-----  
-----.

1. ~ 6. (현행과 같음)

②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③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  
-----  
-----

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④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49조의13제3항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삭 제>



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

-----  
-----.

⑦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

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말한다.

1. ~ 6. (생략)

②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 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 회사는 제249조의 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

1. ~ 6. (현행과 같음)

②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  
-----







20. ~ 29. (생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5. (생략)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 48. (생략)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20. ~ 29.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  
-----  
-----  
-----.

1. ~ 25. (현행과 같음)  
25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일반 사모집합  
투자업-----

25의3. -----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26. ~ 48.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  
-----  
-----  
-----.

1. ~ 40. (현행과 같음)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  
하여 설명서를 작성·제공하  
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  
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  
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

41. (생략)

<신설>

41의2. (생략)

41의3.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해지·해산명령을 따르  
지 아니한 자

42. ~ 44. (생략)

45. 제249조의12제3항·제4항(제  
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49조의22제2항·제6항 또  
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  
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  
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제249조의12제6항(제249조  
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미 취득한 다른 회사의 지

하여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현행과 같음)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  
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  
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현행 제41호의2와 같  
음)

41의4.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42. ~ 44. (현행과 같음)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  
의22제2항·제6항 또는 제249  
조의23제2항-----  
-----  
-----  
--

<삭제>

분증권 전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46의2. 제249조의12제6항·제9항 또는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 63.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1의2. (생략)

41의3. 제24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 49.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46의2. 제249조의23제5항-----  
-----  
-----

47. ~ 63.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  
-----  
-----.

1. ~ 41의2. (현행과 같음)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12제2항-----  
-----  
-----

42. ~ 4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

<p>11. ~ 19. (생 략) ④ (생 략)</p>	<p><u>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u>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u> <u>여 제출한 자</u> 11. ~ 1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	---

